

의안번호	제 113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5년 1월 19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113
--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5년 1월 19일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「지방세법시행령」 개정(2014. 8. 12)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현행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방법 신설(안 제19조)
 -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(석탄·석유·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)가 매월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 시장·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명시
- ※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중 전기판매사업자(한국전력거래소)에게 판매되는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
- 부과대상 지역 규정 (안 제20조)
 -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함

3. 의안전문 : 불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불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불임

6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절(제19조부터 제20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

제19조(신고납부)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발전량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.

제20조(부과대상지역)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〈신설〉</u>	<p>제 5 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</p> <p>제19조(신고납부)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발전량에 대 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 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 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장·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.</p> <p>제20조(부과대상지역) 화력발전에 대 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 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세법

제143조(납세의무자)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발전용수: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(양수발전은 제외한다)을 하는 자
2. 지하수: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·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(採水)하는 자
3. 지하자원: 지하자원을 채광(採鑛)하는 자
4. 컨테이너: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·출항시키는 자
5. 원자력발전: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
6. 화력발전: 석탄·석유·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
7. 특정부동산: 특정부동산의 소유자

제144조(납세지)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. <개정 2011.3.29.>

1. 특정자원

- 가. 발전용수: 발전소의 소재지
- 나. 지하수: 채수공(採水孔)의 소재지
- 다. 지하자원: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. 다만,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.
- 라. 컨테이너: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
- 마. 원자력발전: 발전소의 소재지
- 바. 화력발전: 발전소의 소재지

2. 특정부동산

가. 건축물: 건축물의 소재지

나. 선박: 「선박법」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. 다만,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(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)

다. 토지: 토지의 소재지

제146조(과세표준과 세율)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1.3.29., 2014.12.31.>

1. 발전용수: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

2. 지하수

가.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: 세제곱미터당 200원

나.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: 세제곱미터당 100원

다.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: 세제곱미터당 20원

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

4. 컨테이너: 컨테이너 티이유(TEU)당 1만5천원

5. 원자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1원

6. 화력발전: 발전량 킬로와트시(kWh)당 0.3원

제147조(부과 · 징수)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.

1.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 다만,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.

2.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(이하 이 조에서 “산출세액”이라 한다)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
3.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「지방세기본법」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 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.

가. 삭제 <2013.1.1.>

나. 삭제 <2013.1.1.>

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, 제115조, 제116조 및 제122조(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)를 준용한다. <개정 2010.12.27.>

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·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④·⑤(생략)

□ 지방세법시행령

제136조(과세대상) 법 제142조제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<개정 2011.12.31., 2013.1.1., 2013.3.23., 2014.1.1., 2014.8.12., 2014.11.19.>

1. 발전용수: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. 다만,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.

2. 지하수

가. 먹는 물: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

나. 목욕용수: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

다. 그 밖의 용수: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. 다만, 다음의 지

하수는 제외한다.

- 1)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
- 2) 「지하수법」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(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)에 따른 지하수
3. 지하자원: 채광된 광물. 다만, 석탄과 「광업법」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.
4. 컨테이너: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·출항하는 컨테이너. 다만, 환적 컨테이너,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.
5. 원자력발전: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
6. 화력발전: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(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)은 제외한다.
 - 가. 「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
 - 나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
 - 다. 「전기사업법」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
 - 라. 「집단에너지사업법」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

□ 전기사업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9. (생략)
10. “전기판매사업자”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

자를 말한다.

□ 집단에너지사업법

제9조(사업의 허가)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 <개정 2013.3.23.>

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,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
 2.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
 3.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
 4.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
-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3.3.23.>